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57호 2023. 12. 1(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173호 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2362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4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3-173호

사석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남 원 시 장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당초	변경		
사석지구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2112번지 일원	침수 위험	나	163,280	1,224,000 (+1,060,720)	· 심진강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로 수위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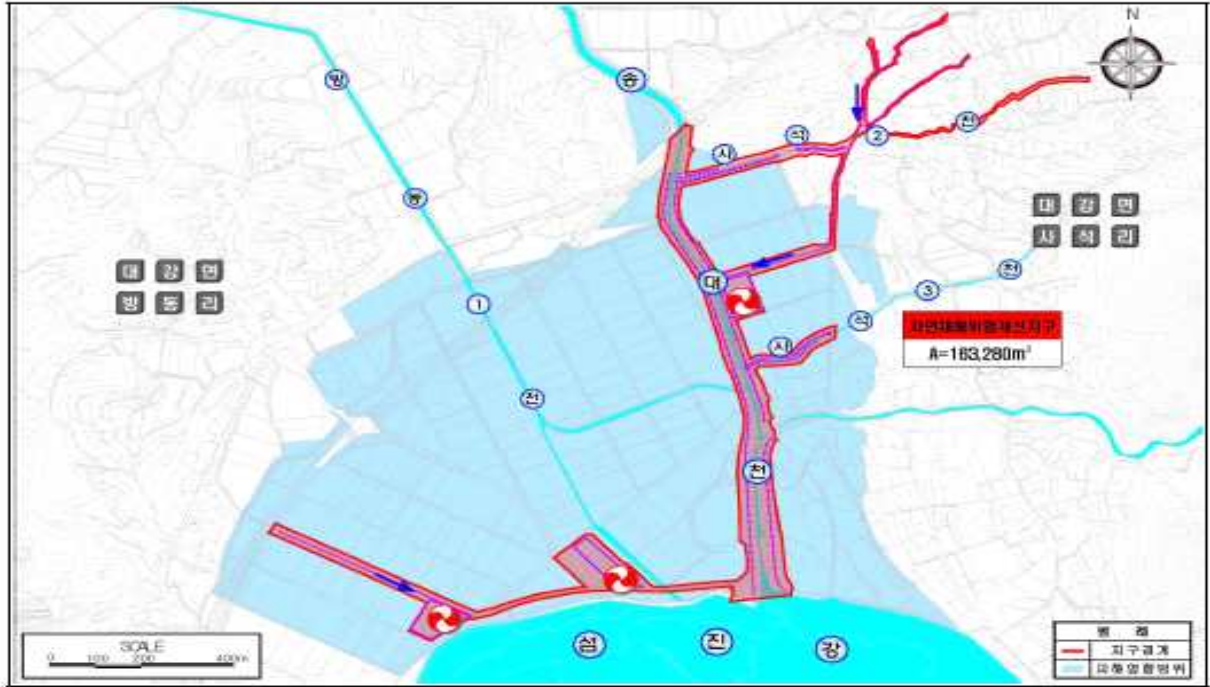
※ 지정 면적 변경 근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 전문가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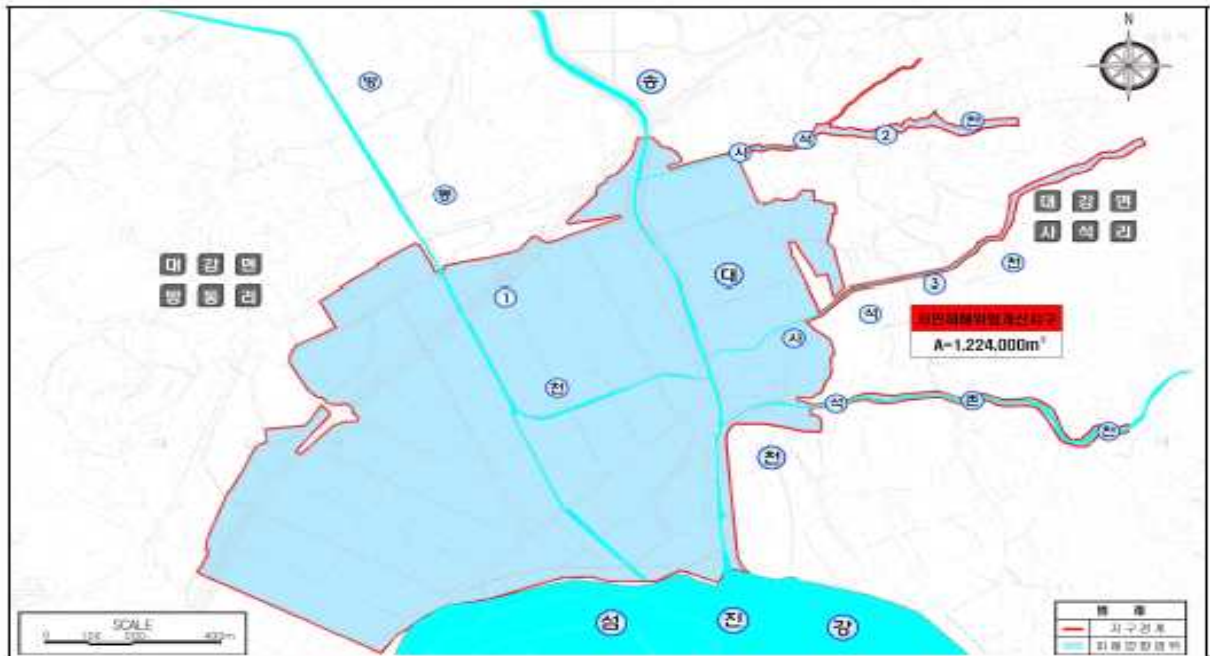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변경)

□ 지형도면(당초)



□ 지형도면(변경)



남원시 공고 제2023 - 2362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건축허가 수수료 위임 인용 조항 및 문구 변경(안 제19조)
-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 및 면적 변경(안 제24조)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및 면적변경
-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5조)
 - 층간소음 및 설비·소방 기준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

고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어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

3.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8.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82), 팩스(063-620-6719),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건축과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수수료 위임 조항 정비 (안 제19조)

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횡수 지정 및 면적 변경(안 제24조)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횡수를 지정 및 면적변경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안 제35조)

- 층간소음 및 설비·소방 기준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어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 ~ 2023. 11.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로,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 1.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3회
-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단, 농·어·임업용 임시창고는 제외한다): 5회

제35조제1항 본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10.4.27., 2014.4.2., 2017.6.16., 2020.2.5.>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립식	제한 없음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화 원	철골조립식	10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조가 아닐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관 련법」 및 「도로법」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 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창고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조가 아닌 것)	400제곱미터 이하	공장, 창고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건축법」 및 「소방 관련법」 등 그 밖의 관 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
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u>법 제17조제2항</u> 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료를 <u>납부하여야</u>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u>납부하지 아니한다</u> .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u>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u> ----- ----- ----- ----- ---- <u>내야</u> ----- . ----- ----- ----- <u>그렇지</u> <u>않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u>횃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횃수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u>3회</u>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 (단, 농·어·임업용 <u>임시창고</u>)

현행	개정안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 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높이 <u>9미터</u>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2. 삭제</p> <p>3. 높이 <u>9미터</u>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② ~ ⑥ (생략)</p>	<p>는 제외한다): 5회</p>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u>10미터</u></p> <p>-----</p> <p>-----</p> <p>2. ---</p> <p>3. -- <u>10미터</u></p> <p>-----</p> <p>-----</p> <p>-----</p> <p>-----</p> <p>-----</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붙임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1. 18., 2006. 5. 12., 2008. 12. 11., 2022. 11. 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11.>

③ 삭제 <2022. 11. 2.>

[제목개정 1999. 5. 11., 2006. 5. 12.]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

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1. 규제사무명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건설국 건축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이영근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양근식 담 당 : 지방시설주사 이창훈 작성자 : 지방시설주사보 태순용																								
4. 근거법령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6호 및 제7항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피규제자 : 가설건축물 건축주																								
6. 규제 존속기한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하고 면적을 변경하여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자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자 함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건축조례 제24조(가설건축물) ⑤ <신 설> ○ 건축조례 [별표 3](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5%;">용도</th> <th style="width: 20%;">구조</th> <th style="width: 10%;">면적</th> <th style="width: 15%;">허용지역</th> <th style="width: 40%;">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td> <td>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한없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장부지내</td> <td>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 관 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td> </tr> </tbody> </table> <<개정규제>> ○ 건축조례 제24조(가설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단, 농·어·임업용 임시창고는 제외한다): 5회 ○ 건축조례 [별표 3](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5%;">용도</th> <th style="width: 20%;">구조</th> <th style="width: 10%;">면적</th> <th style="width: 15%;">허용지역</th> <th style="width: 40%;">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창고에 설치하는 시설</td> <td>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제곱 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장, 창고부지내</td> <td>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 관 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허용지역	기타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 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 관 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용도	구조	면적	허용지역	기타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창고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	400제곱 미터 이하	공장, 창고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 관 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용도	구조	면적	허용지역	기타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 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 관 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용도	구조	면적	허용지역	기타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창고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가 아닌 것)	400제곱 미터 이하	공장, 창고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 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 관 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하게 됨

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현행법 상 가설건축물은 안전·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도 존치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함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상 구조 및 피난·방화 등에 대한 관련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방법령 상에도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화재·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요소

- 가설건축물 설치 및 존치기간 연장 횟수 및 면적 관련사항 대하여 우리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규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 가능성

- 기술수준 등과 관련성 없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할 사항으로 대체 가능 불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으로 인한 난개발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 규제 외 다른 대안 없음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비용 발생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현행법 상 가설건축물은 안전·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도 존치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함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상 구조 및 피난·방화 등에 대한 관련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방법령 상에도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화재·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횟수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로 인하여 공장 및 유통사업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제한을 두기 위함하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 등 : 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여

7.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6호 및 제7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기준·절차 등이 명확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건축법

○ 건축법 상 존속기간이 없음에 따라 미설정

-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비예산 사항이며,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건축법」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적정함
- 10.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6호 및 제7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